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51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박충권·김승수·우재준

이양수 • 박성훈 • 엄태영

조배숙 • 백종헌 • 김용태

김성원 · 서범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할당 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파법은 위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할당이 있을 때마다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재할당 대가 결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되어 왔음.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부과는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의해 통제되어야 함.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할 당 대가 산정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대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 하는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한 직전 할당 대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1.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및 대역폭
- 2.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에 따른 구분

에 의한다)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 (재할당) ① ~ ③ (생 제16조 (재할당)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u>(4)</u>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 -----같은 조 제2 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항, 제3항 전단, 제4항 및 제5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 항(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 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 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을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를 준용한다. <u><신</u> 설> 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 당 하는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한 직전 할당 대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 한다. 1.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및 대역폭 2.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 의 경우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방식(국제전기 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 준 기술방식에 따른 구분에 의한다)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대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재할당 절차 및방법 등에------

----.